

예 산 총 칙

2026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1,432,000,000 | 42,960,000 |
| 일반회계 | 1,287,000,000 | 38,610,000 |
| 특별회계 | 145,000,000 | 4,350,000 |
| 공기업특별회계 | 57,100,000 | 1,713,000 |
|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| 30,400,000 | 912,000 |
|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| 26,700,000 | 801,000 |
| 기타특별회계 | 87,900,000 | 2,637,000 |
| 수질개선톤별회계 | 6,180,000 | 185,400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3,658,000 | 109,740 |
|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| 310,000 | 9,300 |
| 주택사업특별회계 | 268,000 | 8,040 |
| 치수사업특별회계 | 14,936,000 | 448,080 |
| 주차장특별회계 | 2,722,000 | 81,660 |
| 대지보상특별회계 | 301,000 | 9,030 |
|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| 57,765,000 | 1,732,950 |
|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| 1,270,000 | 38,100 |
|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412,000 | 12,360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78,000 | 2,340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,557,854천원으로 한다.

(일반예비비 5,494,502천원,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 12,776,112천원, 내부유보금 5,287,240천원)

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72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